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장

1.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안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1호	유순정 초상 (柳順汀 肖像)	류순정영정 (柳順汀影幀)

<변경 사유>

- 현재 진주 류씨의 한글 표기는 ‘류’로 표기하고 있음
- 류순정 관련 문화재명과 표기 일치화
 - 류홍영정(柳泓影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93호
 - 류순정 • 류홍부자묘역(柳順汀 • 柳泓父子墓域)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2호

2. 변경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1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7.), 제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12. 7. 5.), 제2012-194호(‘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 제2017-306호(‘17. 8. 17.)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47.9	-	639,847.9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639,847.9	-	639,847.9	100.0	
주거 용지	소 계	455,014.1	증) 939.5	455,953.6	71.2	
	공동주택(아파트)	381,978.5	증) 939.5	382,918.0	59.8	
	주상복합	73,035.6	-	73,035.6	11.4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3,915.7	-	3,915.7	0.6	
업무·상업용지		11,963.3	-	11,963.3	1.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8,954.8	감) 939.5	168,015.3	26.3	
	공공청사	4,450.5	-	4,450.5	0.7	
	문화·복지시설	7,901.5	감) 1,283.1	6,618.4	1.0	
	학교시설	27,767.6	-	27,767.6	4.3	
	공원녹지	37,144.8	-	37,144.8	5.8	
	공공공지	12,421.4	감) 939.5	11,481.9	1.8	
	도 로	79,269.0	-	79,269.0	12.4	
	주 차 장	-	증) 1,283.1	1,283.1	0.2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교육시설	소 계	2	2	27,767.6	-	27,767.6	
	신남초등학교	1	1	15,063.3	-	15,063.3	
	신남중학교	1	1	12,704.3	-	12,704.3	
문화·복지시설	소 계	5	4	7,901.5	감) 1,283.1	6,618.4	
	사회복지시설	4	3	5,420.7	감) 1,283.1	4,137.6	
	문화시설	1	1	2,480.8	-	2,480.8	
공공청사	공공청사	4	4	4,450.5	-	4,450.5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4) 교통계획 (변경없음)

5) 경관계획 (변경없음)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39,847.9	－	639,847.9	－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54,316.4	－	254,316.4	주택재개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624.7	증) 303.3	106,928.0	주택재개발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35,583.5	－	35,583.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81,129.2	감) 303.3	80,825.9	주택재건축
존치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315.0	－	5,315.0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35,110.4	－	35,110.4	
	신정3존치관리구역	11,135.4	－	11,135.4	
	신정4존치관리구역	21,948.2	－	21,948.2	
	신정5존치관리구역	16,285.3	－	16,285.3	
	존치구역	69,619.2	－	69,619.2	－
도시계획시설	문화의 거리(25m) 해누리 문화센터	2,780.6	－	2,780.6	－

※ 변경사유 : 신정2-1,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 8)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계획기반 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구성비(%)
기정	신정1재정비 촉진구역	254,316.4	79,235.9	43,152.5	24,182.2	-	11,901.2	4.68
기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624.7	29,058.8	8,579.7	13,675.9	1,283.1	5,520.1	5.18
변경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0	28,119.3	8,579.7	13,675.9	-	5,863.7	5.48
기정	신정3재정비 촉진구역	35,583.5	12,839.8	5,502.2	681.0	-	6,656.6	18.71
기정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19,780.0	5,487.5	1,928.7	-	12,363.8	15.24
변경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0,825.9	19,780.0	5,487.5	1,928.7	-	12,363.8	15.30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624.7	증)303.3	106,928.0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624.7	증)303.3	106,928.0	100
택지	소 계	76,912.9	증)1,242.8	78,155.7	73.1
	공동주택용지	76,912.9	증)1,242.8	78,155.7	73.1
계획기반시설	소 계	29,058.8	감)939.5	28,119.3	26.3
	도 로	14,608.2	-	14,608.2	13.7
	공 원	3,479.6	-	3,479.6	3.3
	녹 지	2,245.0	-	2,245.0	2.1
	사회복지시설	1,283.1	감)1,283.1	-	-
	공공공지	7,442.9	감)939.5	6,503.4	6.1
	주차장	-	증)1,283.1	1,283.1	1.2
준치지역		653.0	-	653.0	0.6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106,624.7	증)303.3	106,928.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142.5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9,202.6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303.3	84,582.9	79.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 도로 (변경없음)
☐ 공원 (변경없음)
☐ 녹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①	공공공지	신정동 1205-2일대	776.8	감)776.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폐 지	②	공공공지	신정동 1221일대	162.7	감)162.7	-	"	
기 정	③	공공공지	신정동 1167-1일대	6,503.4	-	6,503.4	"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유상매입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무상귀속됨에 따라 부담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비정형화된 공공공지를 택지로 변경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사회복지시설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①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1203-11일대	1,283.1	감)1,283.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변경	- 주변 사회복지시설들로 인해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없고, 시설 매입 비용 확보가 어려움 - 촉진지구 내 임시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2-1지구 공사 시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필요성 증대에 따른 변경

☐ 주차장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주차장	신정동 1203-11일대	-	증)1,283.1	1,283.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촉진지구 내 임시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2-1지구 공사 시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라)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기정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624.7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지구	87,025.2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초과 ○ 건립비용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변경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928.0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지구	택지- 1	86,085.7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3,4	1,242.8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초과 ○ 건립비용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 60㎡이하</th><th>전용면적 60㎡~85㎡</th><th>전용면적 85㎡초과</th></tr><tr><td rowspan="2">건립기준</td><td colspan="2">60% 이상</td><td rowspan="2">40% 미만</td></tr><tr><td>20% 이상</td><td>-</td></tr></table> ○ 건립예정 세대수 : 1,904세대(임대주택: 건립호수의 17%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마)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변경)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변경)

구분	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624.7	증)303.3	106,928.0	
	신정2-1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87,025.2	증)303.3	87,328.5	
	신정2-2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50-41번지 일대	19,599.5	-	19,599.5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분할사업 시행지구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624.7	증)303.3	106,928.0	
2-1 지구	소 계		87,025.2	증)303.3	87,328.5	
	택지	소 계	60,663.5	증)1,242.8	61,906.3	
		공동주택용지	60,663.5	증)1,242.8	61,906.3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6,361.7	감)939.5	25,422.2	
		도 로	14,601.9	-	14,601.9	
		공 원	788.8	-	788.8	
		녹 지	2,245.0	-	2,245.0	
		사회복지시설	1,283.1	감)1,283.1	-	
		공공공지	7,442.9	감)939.5	6,503.4	
		주차장	-	증)1,283.1	1,283.1	
2-2 지구	소 계		19,599.5	-	19,599.5	
	택지	소 계	16,249.4	-	16,249.4	
		공동주택	16,249.4	-	16,249.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697.1	-	2,697.1	
		도 로	6.3	-	6.3	
		공 원	2,690.8	-	2,690.8	
존치지역			653.0	-	653.0	신서교회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 면적(㎡)				순부담(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면적	구성비 (%)
기정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06,624.7	29,058.8	8,579.7	13,675.9	1,283.1	5,520.1	5.18
	신정2-1 지구	87,025.2	26,361.7	8,337.8	11,424.5	1,283.1	5,316.3	6.11
	신정2-2 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변경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06,928.0 (증 303.3)	28,119.3 (감 939.5)	8,579.7	13,675.9	-	5,863.7 (증 343.6)	5.48 (증 0.3)
	신정2-1 지구	87,328.5 (증 303.3)	25,422.2 (감 939.5)	8,337.8	11,424.5	-	5,659.9 (증 343.6)	6.48 (증 0.37)
	신정2-2 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전체	1지구	2지구	비고
인구수		5,027	3,952	1,075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40㎡이하	115	90	25	임대주택 337세대 1지구 : 266 2지구 : 71
	40㎡~60㎡	615	460	155	
	60㎡~85㎡	1,075	848	227	
	85㎡이상	99	99	—	
	계	1,904	1,497	407	

다) 신정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라)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정동 1200번지 일원	81,129.2	감) 303.3	80,825.9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129.2	감)303.3	80,825.9	100.0
택지	소계	62,569.4	감)303.3	62,266.1	77.0
	공동주택	62,569.4	감)303.3	62,266.1	77.0
계획기반시설	소 계	18,559.8	—	18,559.8	23.0
	도 로	10,669.8	—	10,669.8	13.2
	공 원	6,538.1	—	6,538.1	8.1
	공공청사	398.8	—	398.8	0.5
	사회복지시설	953.1	—	953.1	1.2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81,129.2	감)303.3	80,825.9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9.1	－	1,009.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6,201.7	－	16,201.7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2,569.4	감)303.3	62,266.1	7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0	－	1,349.0	1.7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361	-	-	361	-	-

☐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공공청사	398.8	신정동 1160-25번 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획지1	62,569.4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이하 (법정상한용적률)	21층이하 (18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837세대 [임대 11세대(0.6%)] - 전용면적 60㎡이하 : 1,476세대(80.4%) - 전용면적 60~85㎡이하 : 291세대(15.8%) - 전용면적 85㎡초과 : 70세대(3.8%)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6층 → 평균 18층(12.5%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0,825.9	공공청사	398.8	신정동 1160-25번 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획지1	62,266.1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1층이하 (18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837세대 [임대 11세대(0.6%)] - 전용면적 60㎡이하 : 1,476세대(80.4%) - 전용면적 60~85㎡이하 : 291세대(15.8%) - 전용면적 85㎡초과 : 70세대(3.8%)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6층 → 평균 18층(12.5%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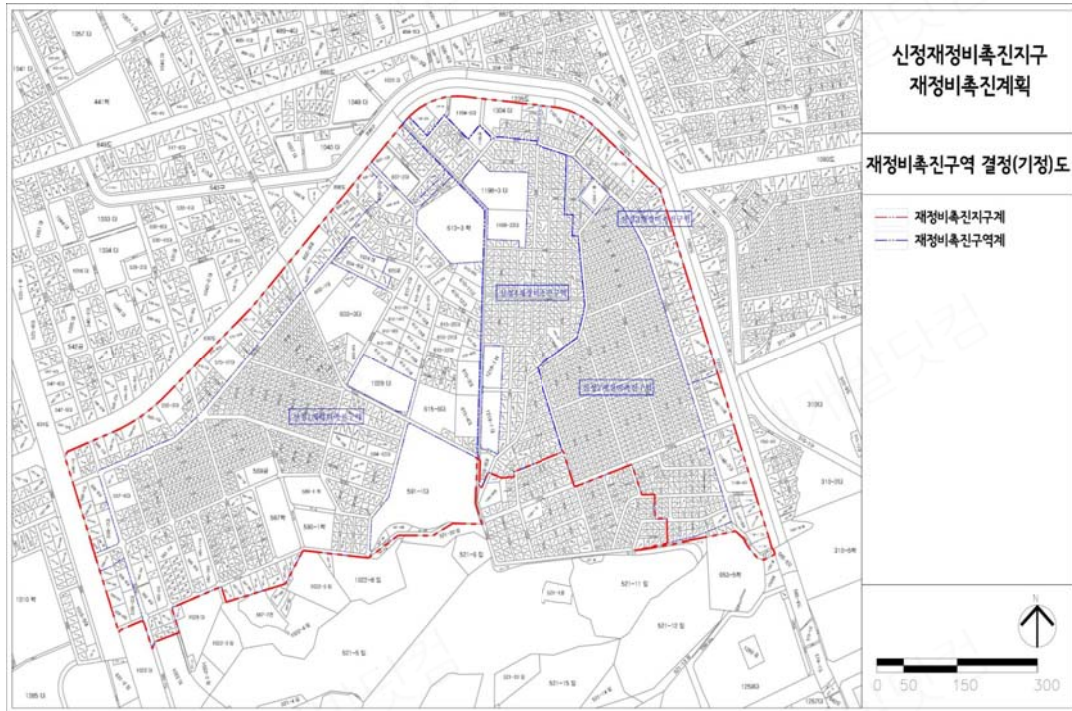
(차)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5.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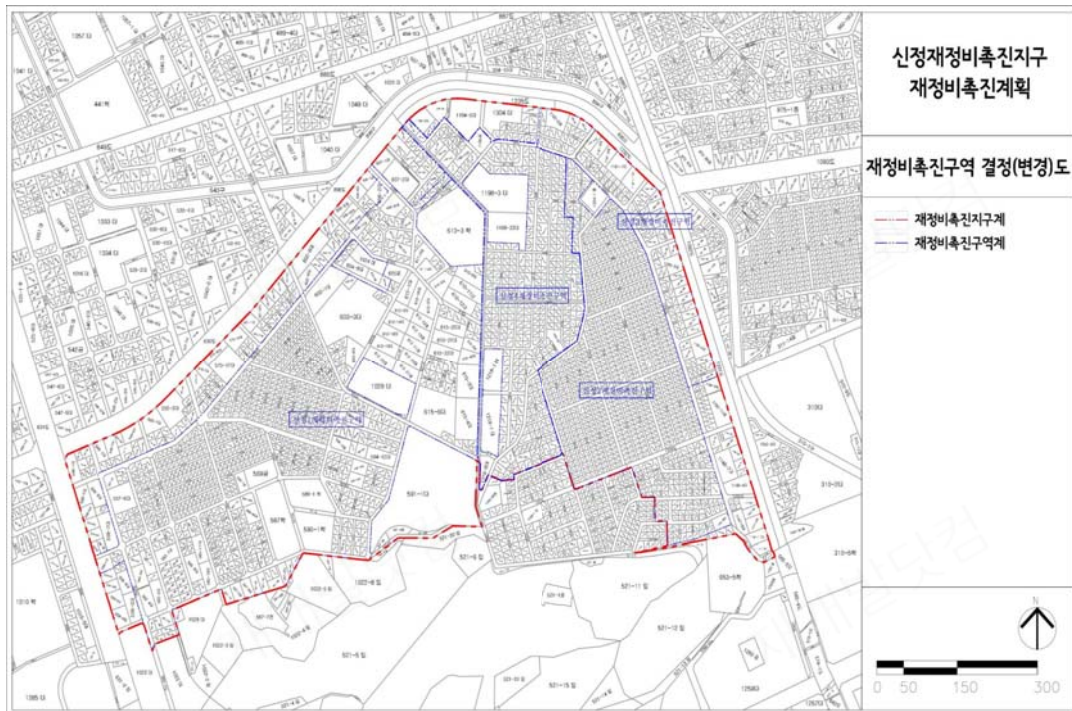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 02-2620-351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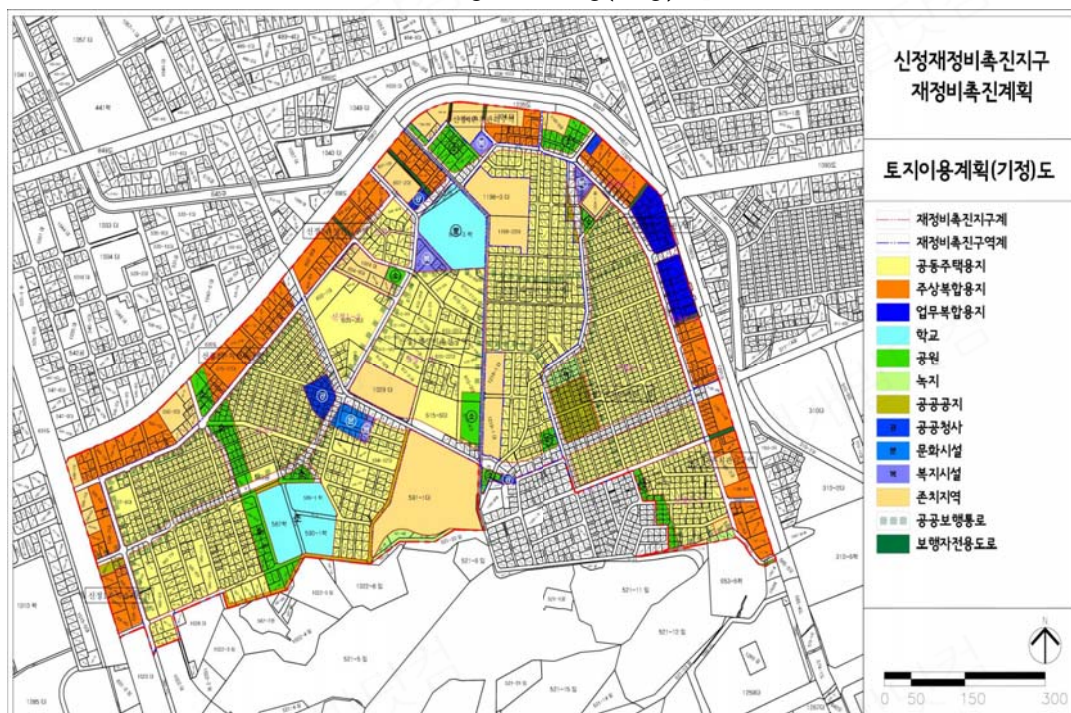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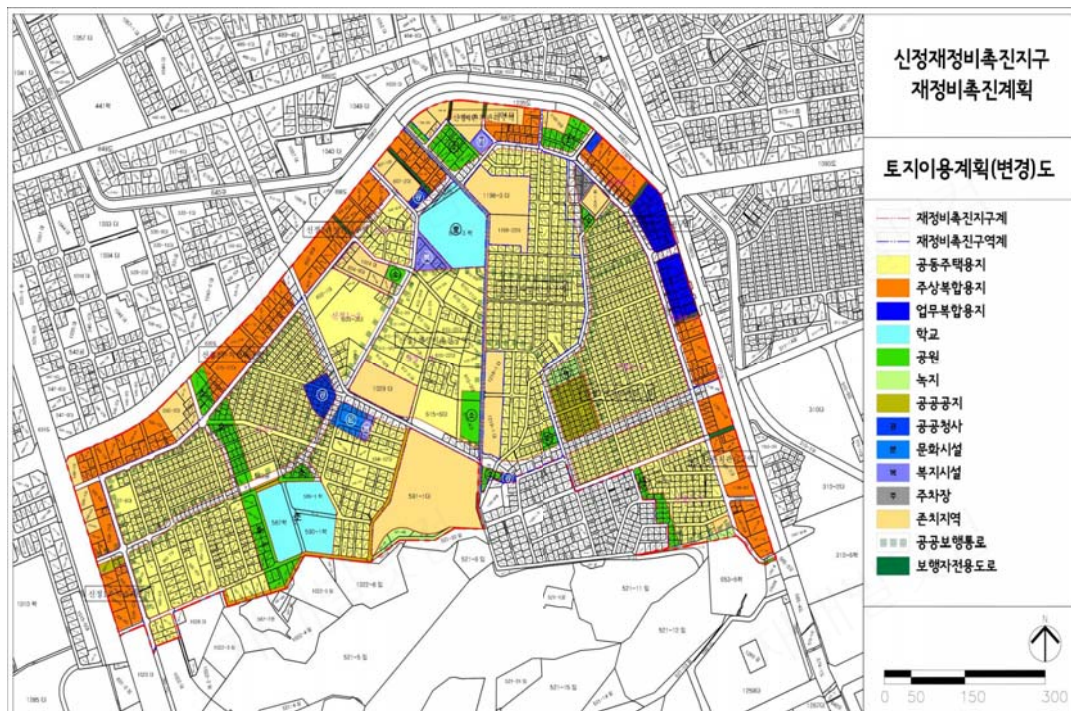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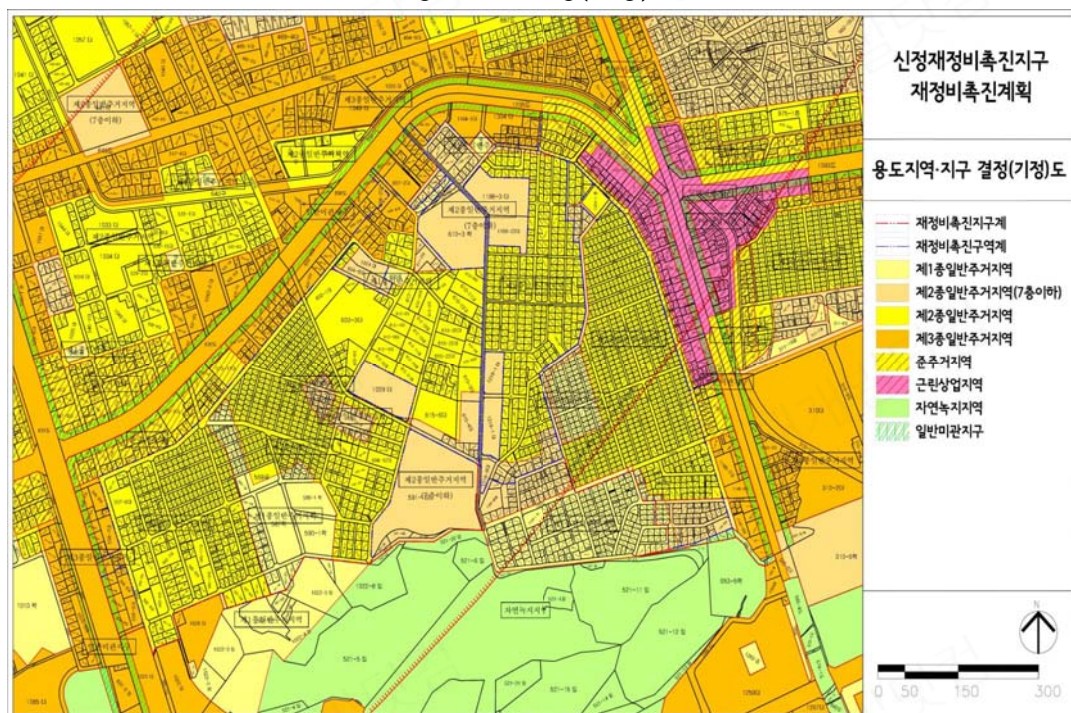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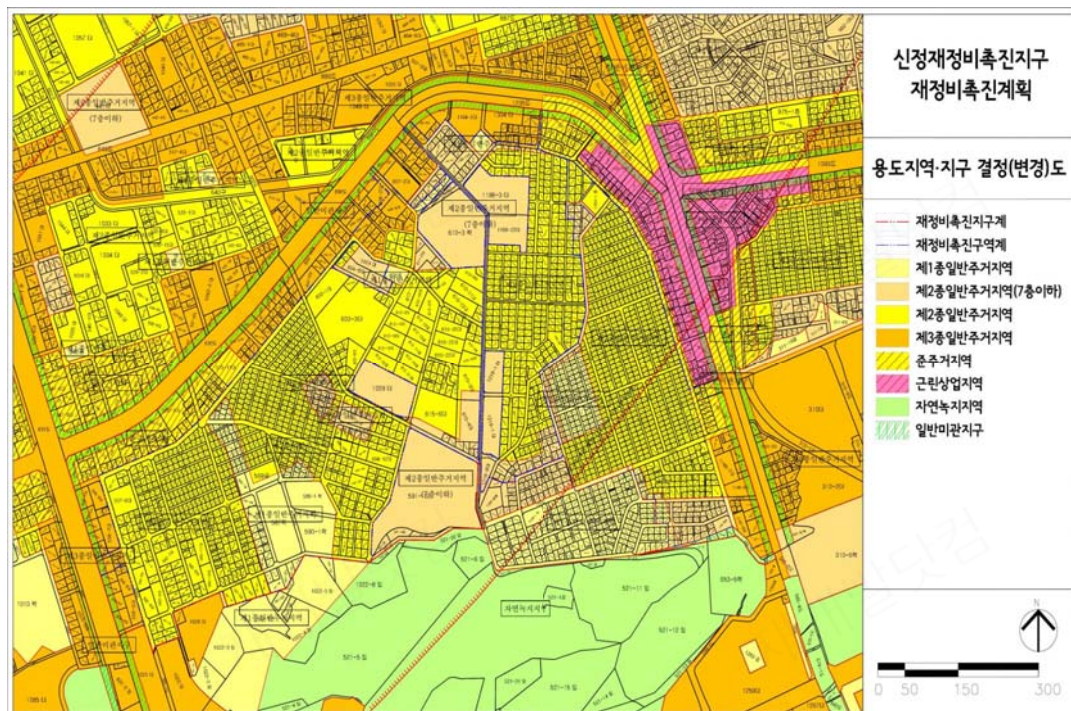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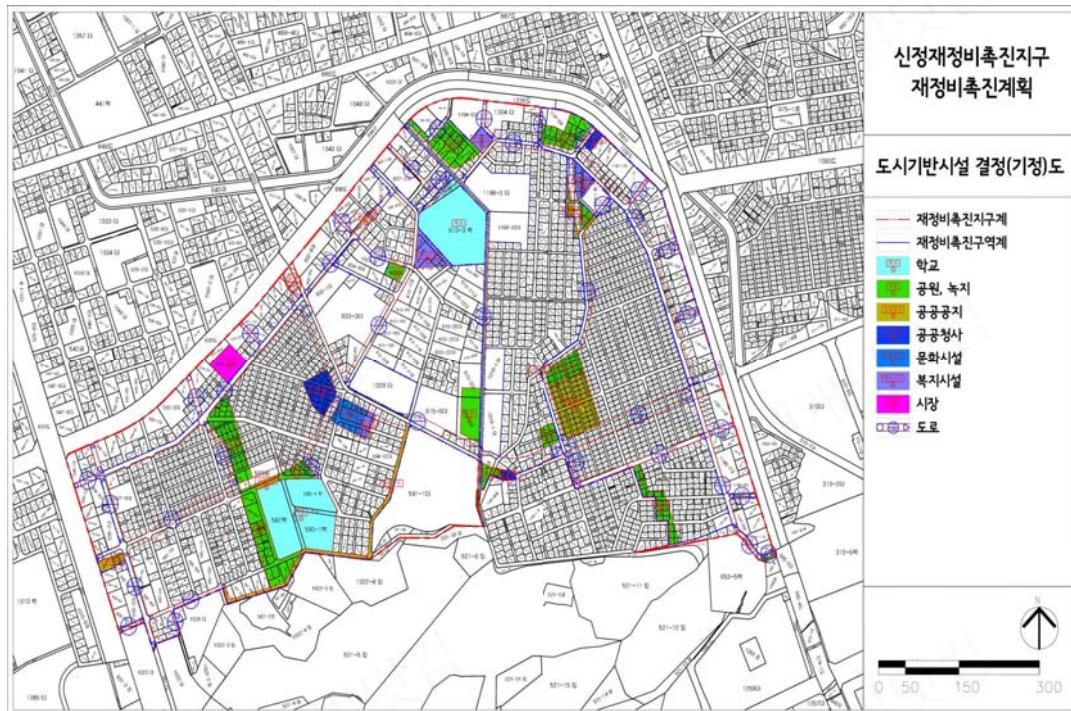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